서귀포 창업성장 Bridge-Up 프로젝트
2026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귀포시 내 유망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금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2026 창업성장 Bridge-Up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25일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1 모집개요

○ (사 업 명) 2026 창업성장 Bridge-Up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공고일(2026.06.25.) 기준 서귀포시 내 소재지를 둔 창업기업

- Track 1. 초기기업: 예비창업 및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 Track 2. 도약기업: 업력 4년 이상 ~ 7년 이내 창업기업

구분	일정	비고
접수기간	2026. 6. 25.(목) ~ 7. 22.(수)	
서류심사	2026. 7. 24.(금) ~ 7. 28.(화)	*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및 발표 일정 안내
발표심사	2026. 8. 4.(화) ~ 8. 7.(금)	
결과발표	2026. 8. 13.(목) ~ 8. 14.(금)	* 개별 통보
협 약 일	선정일 이후	* 선정 대상자 순차 협약 진행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10. 30.(금)	
정산 및 결과 보고서 제출	2026. 10. 30.(금)까지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300,000천원/ 총 60개사/ 기업당 최대 5,000천원(VAT 제외)

○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초기기업: 사업화 패키지・시장검증・투자연계 프로그램 지원
  - ・도약기업: 사업화 패키지・투자연계・컨설팅(멘토) 집중 지원
- 오프라인 팝업 진행 시 우선 참여 혜택

○ (세부사업내용)

- 제품 개발 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

지원분야		세부 내용
사업화 지원	제품 개발	· 기업의 신제품 출시와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제품 개발 비용 지원
	홍보·마케팅	· 신규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홍보·마케팅 비용
	제품 인증	·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강화를 위한 IP출원, 제품 인증 비용 지원
	기타	·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지원

※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세부 내용은 [별표] 참고

3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협약		사업화 진행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홍보 및 접수	▶	서류/발표 평가 심사 및 선정	▶	지원사업 협약 진행	▶	사업화 추진관리 (멘토링, 연계 지원 등)	▶	최종 성과평가 및 정산
6.25~7.22		**7.24~8.14**		**선정일 이후 진행**		**협약일로부터 10.30까지**		**10.30까지**

※ 상기 일정 및 진행방식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결정

○ 평가점수 : 서류 및 발표심사(100점)

○ 평가과정 : 기업별 13분 (8분 발표 & 5분 질의응답)

○ 평가기준 :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시장성, 사업계획의 추진역량, CEO 및 팀 역량,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결과안내 : 선정대상자 개별 통보

○ 심사위원 : 50% 이상 외부 전문가 포함 3인 이상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계획

- 서류 심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배점(안)
준비역량	제품/서비스의 완성도	40
	제품/서비스의 기술성 및 시장성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핵심 인력의 역량	
세부계획 적정성	사업화, 성과창출, 목표달성 가능성	50
지원 필요성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	10
합계		100

- 발표 심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배점(안)
사업화 추진역량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추진 의지	20
시장진입 및 성장전략	시장규모, 경쟁 환경, 시장 진입 전략 등 성장가능성	20
창업아이템 경쟁력	제품/서비스 차별성, 기술 경쟁력, 시장 내 포지셔닝의 적정성	20
CEO 및 팀 역량	CEO 및 핵심인력 역량, 사업아이템 관련 기술 이해도, 문제해결 역량	20
지원 필요성 및 성장가능성	사업 아이템의 후속 투자유치 가능성, 확장성, 지속가능성	20
합계		100

5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 사항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프로그램 유사 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

○ 모집 규모와 관계없이 **최종 평가 점수 70점 미달 시 미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추가 모집 진행 예정

○ **예비창업자는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 접수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사업(아이템)명, 참가 분야 등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접수된 사업 아이디어는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검토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폐기됨(보유기간 최대 5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공고문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과실 및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 박탈,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질병・입원, 해외출장, 천재지변(입도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기업 소속 임직원(4대보험 가입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기일을 경과할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

○ 협약 기간 내 대표자 변경, 타 지역 이전 혹은 폐업 시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비는 협약 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되며, 신청자가 수행기관과의 협의 없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을 중단할 경우, 협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은 주관기관 성과 및 홍보자료에 활용될 수 있음

○ 안내사항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사업추진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온라인(구글폼) 접수

- 신청url : https://forms.gle/ndRHCmJsMWhswz7PA
- 홈페이지 : https://startupbay.or.kr/

□ (문의처)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Tel. 064-732-0049 / E-mail. ncf-jeju@ncf.or.kr

□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 필수	[붙임1]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2] 사업계획서 1부	
	[붙임3] 사업비 집행계획 1부	
	[붙임4] 대표자 프로필(자유 양식) 1부	
	[붙임5]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붙임6-1]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해당시
	[붙임6-2] (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시
	발표자료 (10페이지 내외) : (자유양식) PPT를 PDF로 변환하여 제출	

※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미비)시 서류 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별표 **사업비 집행기준(비목 정의)**

□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및 비목 정의

비 목		기 준
재료비	기준	• **정의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함 •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유의사항	※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수행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수행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
외주용역비	기준	• **정의**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가능 •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외주용역대상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
	유의사항	※ 외부전문 업체 업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수행기관은 외주용역사의 용역수행 이력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외주용역 결과물이 정산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 (예시 : 과업범위 이하의 개발결과물 도출 등) ※ 외주용역의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 프리랜서 중개서비스(크몽, 위시켓 등)를 통한 사업비 집행 불가 ※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에 대한 사업비 집행 불가 ※ 양산목적의 금형 제작비는 집행 불가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기준	• **정의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가능 • 최초 협약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창업기업 본인(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 법인명의로 출원)이어야 함 * 다만, 타인 또는 타 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유의사항	※ 최초 협약시작일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는 집행 불가 ※ 특허 등록에 발생하는 성공보수의 집행은 불가

비 목		기 준
지급수수료	기준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1) 기술이전비 : 창업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 2)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창업기업, 재직 임직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를 집행 가능. 다만,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학회, 세미나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3) 전시회(박람회)참가비 :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에 한하여 집행. 다만,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4) 시험·인증비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
	유의사항	※ 기술이전비 : ①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와 집행과정은 이전기관 내부의 규정을 우선하며,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총괄기관장 또는 수행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형태로 진행 ②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비 집행 시 기술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③ 법인기업은 법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원칙 ④ 기술이전 금액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에 한해 인정하며, 기술이전 금액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나, 공공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적정금액을 평가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시험인증비 : 인증에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컨설팅일지 등 관련보고서를 함께 제출
광고선전비 (홍보비)	기준	• **정의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마케팅비 집행 예시 : 홍보영상제작비,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온라인홍보비, 앱(App)스토어 등록비, 카탈로그 제작비, 일간지·신문 등 광고비 등 광고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지침 제41조(외주용역비)를 준용
	유의사항	※ 웹 호스팅비,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제작(부채, 샘플화장품 등), 유니폼제작,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집행 불가 ※ 모든 광고·선전 활동은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